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9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남인순 · 서미화
김문수 · 소병훈 · 김현정
송옥주 · 김정호 · 최혁진
이건태 · 용혜인 · 허성무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,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,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

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<단서 신설>	1. -----. <u>다만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</u>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생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